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도모
- 나.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재원 확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다. 원수값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상요인 발생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9.7% 인상(안 별표 2)
- 나.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연차별 평균 11.1% 인상(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2013. 3. 14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330	360
	21 ~ 30㎥ (2단계)	470	510
	31 ㎥ 이상 (3단계)	790	860
일반용	0 ~ 100㎥ (1단계)	560	600
	101 ~ 300㎥ (2단계)	780	830
	301 ~ 1,000㎥ (3단계)	890	950
	1,001 ~ 2,000㎥ (4단계)	1,040	1,110
	2,001㎥ 이상 (5단계)	1,160	1,230
욕탕용	0 ~ 1,000㎥ (1단계)	1,000	1,110
	1,001 ~ 1,500㎥ (2단계)	1,100	1,210
	1,501 ~ 2,000㎥ (3단계)	1,220	1,340
	2,001㎥ 이상 (4단계)	1,280	1,400
전 용 공업용	계약㎥당	330	380
	초과㎥당	450	51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 금		비 고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13 mm	1,000	1,090	
20 mm	2,800	3,050	
25 mm	4,500	4,890	
32 mm	8,010	8,720	
40 mm	13,530	14,730	
50 mm	20,750	22,590	
80 mm	57,710	62,810	
100 mm	85,770	93,350	
150 mm	186,780	203,200	
200 mm	265,360	288,740	
250 mm	357,890	389,390	
300 mm	431,680	469,730	
350 mm	543,540	591,600	
400 mm	591,450	643,660	
500 mm	754,740	821,800	
600 mm	1,233,290	1,343,150	
800 mm 이상	1,308,120	1,492,81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4항을 적용			

별표 신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조례 제29 조 관련)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제29조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m]		
업종별	단계별	요금	업종별	단계별	요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m³ (1단계)	300	가정용	0 ~ 20m³ (1단계)	330
	21 ~ 30m³ (2단계)	430		21 ~ 30m³ (2단계)	470
	31 m³ 이상 (3단계)	720		31 m³ 이상 (3단계)	79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52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560
	101 ~ 300m³ (2단계)	730		101 ~ 300m³ (2단계)	780
	301 ~ 1,000m³ (3단계)	830		301 ~ 1,000m³ (3단계)	890
	1,001 ~ 2,000m³ (4단계)	970		1,001 ~ 2,000m³ (4단계)	1,040
	2,001m³ 이상 (5단계)	1,090		2,001m³ 이상 (5단계)	1,160
욕탕용	0 ~ 1,000m³ (1단계)	900	욕탕용	0 ~ 1,000m³ (1단계)	1,000
	1,001 ~ 1,500m³ (2단계)	990		1,001 ~ 1,500m³ (2단계)	1,100
	1,501 ~ 2,000m³ (3단계)	1,100		1,501 ~ 2,000m³ (3단계)	1,220
	2,001m³ 이상 (4단계)	1,160		2,001m³ 이상 (4단계)	1,280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280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330
	초과 m³ 당	390		초과 m³ 당	45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m³당 요금임.			※ 현행과 같음.		
※ <u>조례 제47조의</u> 상수도 시설 훼손, 제 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요율 적용			※ <u>「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u>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별표 4]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조례 제35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금	구경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13 mm	<u>910</u>	13 mm	<u>1,000</u>	<u>1,090</u>
20 mm	<u>2,550</u>	20 mm	<u>2,800</u>	<u>3,050</u>
25 mm	<u>4,110</u>	25 mm	<u>4,500</u>	<u>4,890</u>
32 mm	<u>7,300</u>	32 mm	<u>8,010</u>	<u>8,720</u>
40 mm	<u>12,330</u>	40 mm	<u>13,530</u>	<u>14,730</u>
50 mm	<u>18,910</u>	50 mm	<u>20,750</u>	<u>22,590</u>
80 mm	<u>52,610</u>	80 mm	<u>57,710</u>	<u>62,810</u>
100 mm	<u>78,190</u>	100 mm	<u>85,770</u>	<u>93,350</u>
150 mm	<u>170,360</u>	150 mm	<u>186,780</u>	<u>203,200</u>
200 mm	<u>241,980</u>	200 mm	<u>265,360</u>	<u>288,740</u>
250 mm	<u>326,390</u>	250 mm	<u>357,890</u>	<u>389,390</u>
300 mm	<u>393,630</u>	300 mm	<u>431,680</u>	<u>469,730</u>
350 mm	<u>495,480</u>	350 mm	<u>543,540</u>	<u>591,600</u>
400 mm	<u>539,240</u>	400 mm	<u>591,450</u>	<u>643,660</u>
500 mm	<u>687,680</u>	500 mm	<u>754,740</u>	<u>821,800</u>
500 mm 이상	<u>1,123,430</u>	600 mm	<u>1,233,290</u>	<u>1,343,150</u>
		800 mm 이상	<u>1,308,120</u>	<u>1,492,810</u>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 35조 제4항 각호 적용)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 35조 제 4항을 적용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 2.29>